

# 공고

거안제	구워정리과 입준용	전화번호	465	공보	필요불필요
정자, 판자, 입	구워정리과	장	도시계획국	장	제2부시장
장	도시계획국	장	제2부시장	장	장
발주처	도시계획국	장	제2부시장	장	장
서	도시계획국	장	제2부시장	장	장
기안일	66. 4. 16	일	66. 5. 6	일	일
분류번호	432.4 - 56	문서번호			
경수	윤선조	각인	참조	발신	
제	목	<b>공고제 71 호</b>			
제 1 안					
내부결재					
1966. 3. 18 서도구 432.4 - 4562호로 신청한 서울 도시계획 독					
도 오지구워정리 사업 실시 계획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 2342호 (건축시지					
령 432.4 - 1617. 66. 4. 16자)로 인가되었기 본 사업 시행사항을 아래와 같					
이 공고하고자 재결을 바랍니다.					
1. 공고안	다음 제 2 안				
2. 공고신문	서울신문 조선일보				
3. 소요예산	- 금 24,000 원정				
	내역 (3단 40행 x 100원) x 2사 = 24,000 원				
4. 지출비목	독도 오지구워정리비, 사무비, 수수료 및 수선비				
5. 지출방법	공고후 청구에 의하여 직불함.				
제 2 안					

도시계획국

46

서울시계회국  
사무과주산실

479

5-1 3-1

서울특별시



나. 독도 오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의 ~~권익~~ 권익을 침해하는 즉시  
 신, 구 토지소유자의 연서로 신고할것.

다. 공공부 권한의 자항을 이행치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 
 당시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.

4. 공고에 대한 서류 송달은 철도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될것이나, 미 수령된  
 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함.

제 3 안

수신	수신처 참조	발신	시 장
제목	독도 오지구획정리 사업 실시 용고		

1. 금번 당사에서 시행하는 독도 오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에 편입  
 된 구하 소유 토지에 대하여 건설부 고시 제 2342호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 2  
 6조에 규정된 사업을 시행케 되었기 용고 합니다.

2. 관계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 과 및 군합 구청에 비치  
 증명여 공함.

3. 토지 내용

등 명	지 번	지목	면 적	소유자	비 고
-----	-----	----	-----	-----	-----

유첨. 공고문 사본 1부.

수신처. 별첨 토지 소유자 조서

제 4 안

수신	성동구청장	발신	시 장
----	-------	----	-----

257

3-2 5-3

서울특별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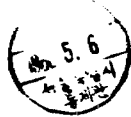
3

제목	등    진		
<p>건설부 고시 제 2342호 ( 66. 4. 16 )에 의거 귀 관내 일부 토지에 대하여 독도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케 되었기 관계로서 및 도면을 송부 하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증람에 공하기 바랍.</p>			
<p>유첨: 1. 공고문 사본 1부. 2. 관계 도면 1부.</p>			
제 5 안			
수신	수신처 참조	발신	시    장
제목	등    진		
<p>건설부 고시 제 2342 호 ( 66. 4. 16 ) 로 독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 계획이 인가 되었기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.</p>			
<p>유첨. 고시문 사본 1부.</p>			
수신	수신처 참조	발신	국    장
제목	등    진		
<p>당국에서 집행할 독도 토지구획정리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문 사본을 송부하니 귀 소관 사업 수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</p>			
<p>유첨. 고시문 사본 1부.</p>			
<p>수신처. 건설국장, 수도국장</p>			
제 7 안			
수신	공보실장	발신	국    장

수신자  
제 6 안 7. A. P.

제목 | 동 권

독도 호지구획정리 사업 실시 공고문을별지 사본과 같이 공고하였음  
으로 시보, 서울 뉴-스 및 주유 일간 신문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유첨.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

5/2

5-5

5-5

3-3

서울특별시 5